

#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

## 주요내용 설명

---



# 목 차

## 1. 지식재산권의 정의

## 2.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주요 내용

- 승계의 절차
- 제3자와의 공동특허
- 보상금의 확대

## 3. 향후 계획

# 지식재산권이란?

## 정의

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· 정보 · 기술이나 표현,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**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**

## 종류



〈특허권〉



〈실용신안권〉



〈디자인권〉



〈상표권〉

## 공단 보호권리

- 발명 중 “직무발명”
- 자유발명 중 공단이 “승계한” 지식재산권

## 관련법령

- 발명진흥법, 실용신안법, 디자인보호법, 상표법 등
-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

#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

시설물 관리의 기술 개발 등을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김과장은 시설관리의 중요기술을 개발함. 김과장은 해당 중요기술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여, 해당 기술을 A회사에 보고하지 않기로 함. 김과장은 또 다른 시설관리 개발업체인 B회사와 비밀리에 실용화하기로 하고, 사업이 정착되면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취업하기로 하였음.  
어느날 김과장에게 검찰에서 전화가 오는데…



## 임직원의 겸직제한

**제61조(임직원의 겸직 제한)**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,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상근(常勤)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서 "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"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(지방공기업법)

#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

## 영업비밀의 의의

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,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

## 영업비밀 침해행위

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호)

##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제재

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·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)

#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

## 영업비밀 및 자료반출과 업무상 배임죄

회사직원이 ……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,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,

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,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.

(대법원 2008.8.24.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)

#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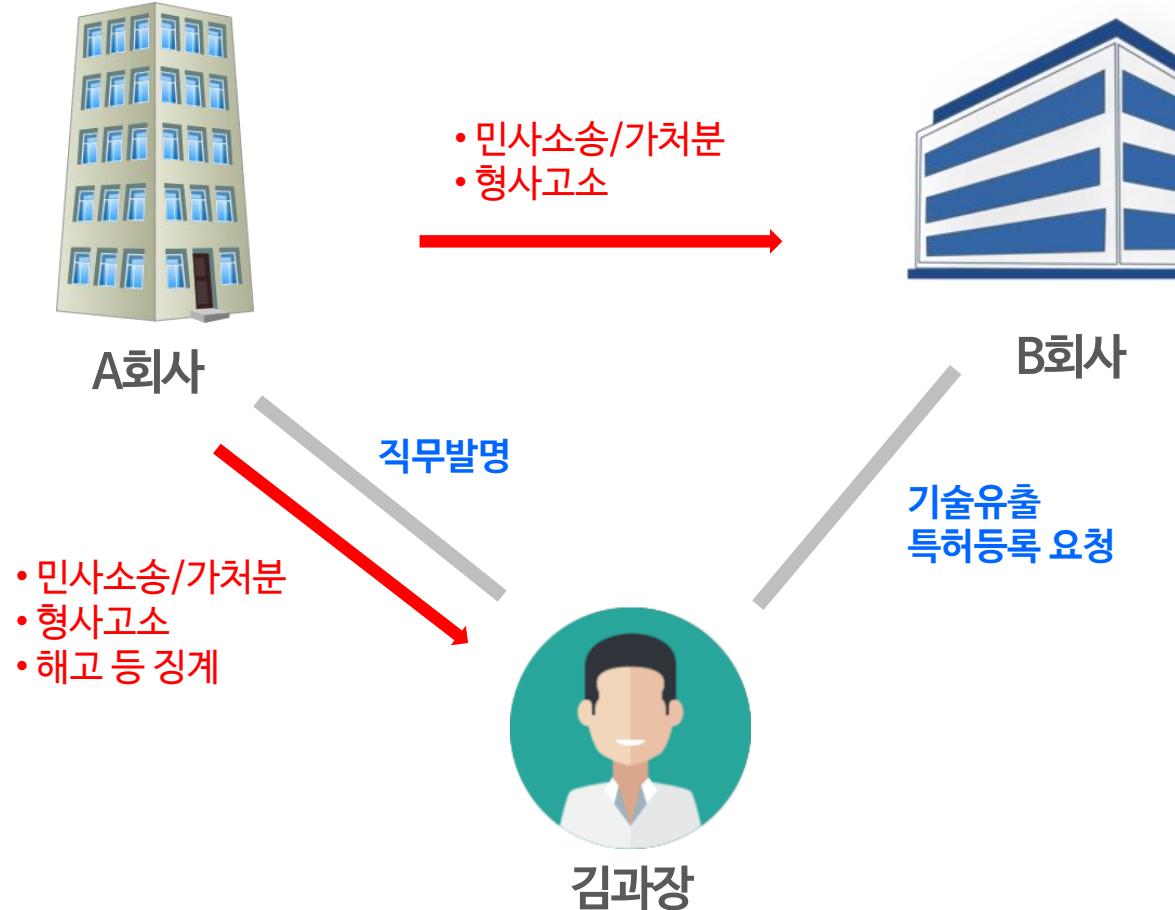
## 직무발명과 업무상 배임죄 등

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·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하 '사용자 등'이라 한다)에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,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(이하 '종업원 등'이라 한다)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,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,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. ([대법원2014.11.13.선고2011다77313,77320판결](#))

종업원 등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,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.

([대법원2012.11.15.선고2012도6676판결 등](#))

#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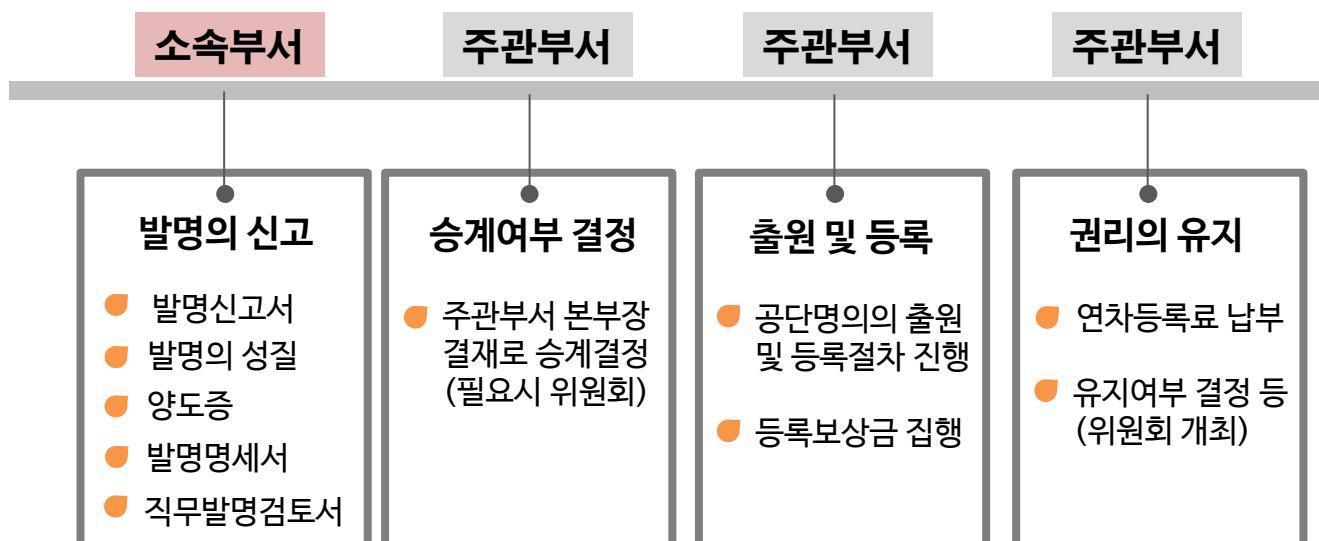


# 지식재산권 관리규정(단독출원)

## 단독발명의 신고 및 승계

- 직무발명을 한 직원은 즉시 소속부서장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, 소속부서장은 운영부서장(발명을 공단에서 활용하는 부서)의 의견을 받아 주관부서장에게 승계 요청
-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 주관부서 본부장의 승인 하에 승계 여부 결정  
(필요시,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개최)

## 단독발명시



# 지식재산권 관리규정[공동출원]

## 제3자와의 공동발명

- 운영부서장은 제3자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개발, 취득, 승계, 사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**사전에 요청**하여야 함.
- 운영부서장은 사전 심의 요청시, 제3자의 정보 및 계약서(안) 등을 제출

### ◆ 공동발명시





## 제3자와 공동발명 등을 추진할 경우의 유의사항

공동발명 착수전 사전심의 요청  
(운영부서장)



공동발명 추진 승인여부 심의  
(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)



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에 따른  
발명 · 출원 · 등록 등 실시



계약서상 권리 · 의무 불이행시  
각종 조치 시행



공단의 권리 보호, 비위행위 차단 등을 위한 투명한 절차 체계 확립

## 보상의 범위 확대

- 보상은 등록보상, 출원유보보상, 처분보상, 방어보상 등으로 확대함.

### ● 신·구문 대비

보상의 종류	기존 규정	신규 규정	비고
등록보상금	O	O	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
출원유보보상금	X	O	등록보상금을 고려하여,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
처분보상금	X (이사장 방침으로 지급)	O	공단수입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0%를 발명자에게 지급
방어보상금	X	O	특허권, 실용신안권 20만원 디자인권, 기타 권리 10만원

※ 단,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감액 또는 미지급 결정할 수 있음.

# 향후 계획

##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공포 · 시행

- 이사회 부의 및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공포 및 시행(7월 중)
- 창의활동운영및보상에관한규정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일제 정비

##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

- 기존 지식재산권 중 계약서 등이 미흡한 공동발명에 대한 조치 요구
-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활용실적, 판매실적 등이 없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 조치 실시

##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교육

- 직무발명 절차 등의 교육으로 비위행위 등 문제점 사전 차단
- 보상절차 등의 교육으로 직원의 발명 의욕 고취

감사합니다

---